



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재계약 보고 -

제 안 설 명 서

2021. 5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문화체육관광과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재계약 보고 -

제 안 설 명 서

보 고 자: 문화체육관광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
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우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구립 합창단의 위·수탁 협약기간이 2021년 6월 30일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립니다.

구립 합창단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1991년 여성합창단으로 시작하여 1994년 대구시 유일의 남성합창단을 창단한 구립 합창단은 201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운영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된 보조금 및 위탁금으로 운영되며 활동단원은 지휘자와 반주자 각 1명, 솔리스트 4명, 남성 및 여성단원 50명 등 총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매주 남·녀 각 1회 합창단 연습실에서 정기연습이 이뤄지고 있으며, 장소는 문화회관길 160 웃는얼굴 아트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

○ 주요활동으로 정기 및 임시 공연, 찾아가는 음악회와 초청공연 등이 있으며,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함양 및 구민화합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.

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구립 합창단의 운영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에 근거하여 (재)달서문화재단에 민간위탁할 예정이며, 이를 위해 2021년 6월 적격심사를 위한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, 적격여부를 심사 후 위·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○ 지역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달서구 구립 합창단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재계약 보고

의 번 호	0082/083
---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: 2021. 5.
제출자: 달서구청장
(문화체육관광과장)

1. 제안이유

- 우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구립 합창단의 위·수탁 협약기간이 2021. 6. 30.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의2에 따라 의회에 보고함.

2. 주요내용

가. 대상현황

- 위탁대상: 달서구 구립 합창단
- 단원현황: 단원 56명(지휘자 1, 반주자 1, 솔리스트 4, 단원 50)
- 운영: 매주 화·목 정기연습(합창단 연습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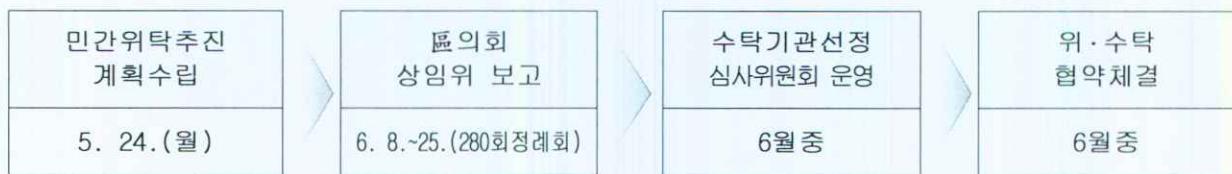
나. 위탁개요

- 위탁기간: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
- 수탁자 선정방법: (재)달서문화재단과의 수의계약
※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수의계약
- 위탁금액: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된 보조금(위탁금)
※ 2021년 예산: 63,724천원(본예산 기준)

○ 위탁사무

- 구립합창단 활동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- 정기(임시)공연 및 각종 대회·세미나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
- 기타 지역문화 예술단체와 협력·육성 등에 관한 사항

○ 위탁 추진절차

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4조~제7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

3. 향후 추진일정

-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: 2021. 6.
- 위·수탁 계약체결 및 공증 : 2021. 6. 25.(금) 예정
- 위·수탁 개시 : 2021. 6. 30.(수)

【 관 련 법령 】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)

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의2(의회동의 및 보고)

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
2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
4. 기타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구의회에 보고한 경우

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위탁 또는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4조(운영 등)

- ① 합창단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 운영한다.
- ②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며, 합창단의 활동을 지원한다.
- ③ 합창단의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
□ 대구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재단의 사업)

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개정 2017. 12. 29)

1.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 및 교육·연구
2.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·관리
3.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
4. 구립예술단체,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
5.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
6. 여성의 문화 활동, 능력개발, 취업지원 등
7.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운영·관리
8.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